

202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22. 1. 13. (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 공지사항 및 투표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목 차

## 【심의사항】

1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심의	3
---	--------------------------------	---

## 【보고사항】

1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2022-2026) 보고	13
2	제16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결과 보고	16



# 심 의 사 항





## 1. 「양주 회암사지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 가. 제안사항

「양주 회암사지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도에서 신청한 「양주 회암사지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다.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 여부 결정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라. 잠정목록 등재신청서(안) 주요 내용 (\*세부내용 발표자료 참조)

- 제시한 유산명칭 : 양주 회암사지 유적  
(Archaeological Site of Hoamsa Buddhist Temple in Yangju)
- 신청유산

연번	명칭(문화재명)	지정종별	지정일	비고
1	양주 회암사지	사적	1964.06.10.	신양, 수행, 생활영역
2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	보물	2021.06.24.	
3	양주 회암사지 선각왕사비(귀부)	보물	1963.09.02.	부속시설 (고승들의 기념물)
4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보물	1963.09.02.	
5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앞 쌍사자 석등	보물	1963.09.02.	
6	지공선사부도및석등	시도유형문화재	1974.09.26.	
7	나옹선사부도및석등	시도유형문화재	1974.09.26.	
8	무학대사비	시도유형문화재	1974.09.26.	
9	양주회암사지공선사부도비	문화재자료	2004.11.29.	

○ 등재기준

- 기준(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신청유산은 14세기 동아시아에 만개했던 불교 선종 문화의 변영과 확산을 증명하는 탁월한 물질 증거이다. 이 고고학 유적지는 불교 선종의 수행 전통, 사원의 공간구성 체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보 고 사 항



## 1.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완료보고

### 가. 보고사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추진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이하 세계유산 종합계획)’이 수립 완료됨에 따라 주요내용,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우리 청은 「세계유산법」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세계유산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음
- ‘세계유산 종합계획’은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추진방향과 구체적 실천 계획 등을 담고 있는 5년 주기의 법정계획이자, 향후 각 지자체 등의 5개년 시행계획 수립(동법 13조)을 위한 준거가 되는 종합계획임
- ‘세계유산 종합계획’이 수립 완료됨에 따라 주요내용과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에 대하여 종합계획 및 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 「제16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결과 보고

### 가. 보고사항

「제16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 위원국으로서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에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4년간의 임기(2020-2024)로 활동 중이며, 제16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역할과 기능>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등재 결정
2.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운영지침 개정안 검토 및 총회 상정
3. 10만 달러 이상의 국제원조, 무형유산보호 모범사례 검토 및 승인
4. 협약 가입 당사국의 각종 보고서 검토 등
5.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국제협력 등 주요 논의와 결정에 주도적 참여

#### \* 위원국 구성

- 4년 임기의 24개 위원국으로 구성(연임 불가, 위원국 수임 후 2년 휴지)
- 격년 개최되는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 6개 지역 그룹별 공석에 따라 다득표 순으로 선출

### 다. 주요내용

#### 1) 제16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개요

- 기간/방식 : 2021.12.13.(월) ~ 12.18.(토) / 온라인
  - 시간 : 10:15 ~ 15:15 (한국시간 18:15 ~ 익일 01:15)
- 주요 참석자 : 24개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대표단(한국 포함), 180개 협약 가입국 대표단, 유네스코 인가 NGO, 전문가 등
  - 한국 대표단 : 외교부(주유네스코대표부, 유네스코과), 문화재청(세계유산정책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문화팀)
- \* 수석대표 : 주유네스코대표부 대사 / 국내 대표단은 온라인 참석

2) 위원회 일정 및 의제

일자	주요일정	비고
'21.12.13.(월)	개회식 및 의제 채택 정기보고(라틴아메리카 & 카리브해 국가) 검토	
'21.12.14.(화)	긴급보호목록 심사 등	긴급보호목록 심사 : 6건
'21.12.15.(수)	대표목록 심사	대표목록 심사 : 48건
'21.12.16.(목)	대표목록 심사 모범사례 심사 국제원조 요청 심사	'매사냥' 확장 등재 심사 포함 (한국 등 18개국 공동등재국에 6개국 추가)
'21.12.17.(금)	NGO포럼, 등재유산 후속 조치 보고 무형유산기금 운영 계획 보고	
'21.12.18.(토)	2022년 평가기구 선거 차기 위원회 개최지 결정 등	